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2018. 12.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사업개요

□ 연 혁		
o 2003 .	01	장애인콜택시 운행 개시(100대)
O 2005.	03	이용대상 조정 ※1·2급 지체, 뇌병변, 기타 휠체어 장애인
O 2006.	01	이동지원센터 구축(374백만원)
O 2010.	09	市 소관부서 변경(도시교 통본부 보행자전거과)
O 2013.	07	비휠체어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영(50대)
O 2014.	03	운영팀 산하 이동지원센터 운영
O 2015.	01	다인승버스 운영(1대)
	01	市 소관부서 변경(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04	이용대상 확대 ※3급 지체·뇌병변 임산부
O 2016.	09	이용요금 조정(단거리 인하, 장거리 인상) ※'16.9.5.(월) 시행
O 2017.	04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배리어프리)
O 2018.	11	장애인콜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2차)
	12	차량 신형 내비게이션 도입 운영

- 연도별 증차 현황 -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2016
100대		170대 (중 50대)							

□ 대행사업 근거 · 관련법령

- **대행시업근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 □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대행사업 협약 서울시↔공단) 〉

• **협약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운영규모 : 장애인콜택시 437대, 이동지원센터 1개소

• 대행사무 :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 관련법령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 "<u>특별교통수단</u>"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u>제1급 및</u> <u>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u>를 말한다.

※ 법정대수 산출대상 : 1, 2급 장애인 전체 85,955명

법정대수 : 85,955명 ÷ 200명 = 430대

-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기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조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Ⅱ 일반현황

1 조 직 : 1처 2팀 1관리소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운 영 팀 (팀원 6명)

- ㆍ기획, 예산
- 경영평가
- · 의회 업무
- · 민원, 포상, 수입금

▶ 사 무:6명

이동지원센터 (팀원 2명, 상담원 38명)

- · 접수·배차
- · 데이터 분석
- 콜시스템 및 전산관리
- · 상담원 관리(복무, 급여등)
- · 기타 센터 민원처리 등

▶ 교 통: 1명

▶ 전 산:1명

▶ 상담원 : 38명

관 리 팀 (팀원 8명)

- · 운전원 관리(복무, 급여 등)
- · 차량관리(정비, 보험 등)
- · 콜장비만에(내비, 이동통(기기 등)
- · 기타 자워봉사 등

▶ 사 무:4명

▶ 통 신: 2명

▶ 차 량: 2명

※ 별도 : 공로연수 2명(2급)

인 원 : 총 514명

【관리직 20/운전원 456/상담원 38】

- u	= _11		일반직										사회 복 지직		
구분	분 총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운전원	상담원		
정원	514	19	-	2	3	4	7	2	1	-	495	457	38		
현원	514	20	-	2	2	2	5	6	3	-	494	456	38		
증감	-	1	ı	-	△1	△2	△2	4	2	-	△1	△1	-		

※ 기간제 근로자 : 운전 23명, 미화 1명

예산 및 사업수지

□ 예산편성 현황

○ 2018년 세입예산

구 분	2017 목표(A)	2018 목표(B)	증 감 (B-A)	2018년 주요내 용
운행수입	2,527	2,536	9	정규·휴무차량 운행 수입금

○ 2018년 세출예산

<u> </u>	5년 제출에인	<u>!</u>			(단위 : 백만원)
· 항	무 분 목	2017 (A)	2018 (B)	증 감 (B-A)	2018년 주요내용
	· 총 계	38,302		3,719	
	인건비	14,862	16,084	1,222	▶ 호봉승급분 및 급여인상분(2.6%)반영
	퇴직급여	1,669	1,691	22	▶인건비 인상에 다른 증액
	경 비	12,876	13,927	1,051	
진	연구개발비	55	40	△15	
직 접 관 리	교육훈련비	64	75	11	▶운전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신규)
관 리	수선유지교체비	260	404	144	▶DB시스템 교체, 콜프로그램 교체 등
비	평 가 급	1,963	1,145	△818	▶서비스직 일반직화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조정(200→100%)
	위탁관리비	1,760	1,820	60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수보조금 증액
	예비비	-	_	_	
	수탁자산취득비	2,019	4,375	2,356	▶대폐대수 증가(50→106대)
간	·접관리비	2,774	2,460	△314	

□ 수입실적 및 사업수지

○ 市세입 : 2,317백만원(성과목표 : 2,536백만원 / 달성률 91.4%)

○ 과목별 내역 (수입)

구 분	市세입(A)	수입실적	지 출
	(성과목표)	(B)	(C)
 운행수입	2,536	2,317	32,004

수지 율 (B/C)
7.2%

(단위: 백만원)

(다위: 밴마워)

※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제외

||| 주요(시설) 운영 · 관리현황

1 운영개요

□ 이용대상 : 1 · 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 · 2급 장애인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울특별시 고시
증진법 시행규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843호('08.6)
1.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1·2호에 해당하는 교통 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1. 1급 또는 2급 장애인 2. 1호 외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 2. 휠체어 이용 1·2급, 기타 이동지원센터 승인을 받은 자 3. 1~2 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

○ 대상인원 : 85,955명 (전체 391,753명의 22%) → 공단등록 : 30,445명(이용대상의 35%)

7 8		지	체	뇌	병변	<u> </u>	출기	'	폐	정	_		적	시각	청각
	구 분								2급		2급		2급	1급	2급
	제한없음	0	0	0	0	0									
제	휠체어 사용						0			0	0		0	0	0
한	보호자 동반							0	0	0	0	0			

[※]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3급 지체 및 뇌병변 임산부 (※단, 병원 진료 목적시 이용가능)

^{※ 1, 2}급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이용요금

○ **관련근거**: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요금체계 : 일반택시요금 ⇒ 대중교통 요금체계로 변경('08, 7월) ⇒ 01용요금 조정('16.9월)

 \Box

기 존(도시철도 요금의 1.2배)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 추가요금

- 5km초과~10km이하: 300원/km

- 10km초과 : 35원/km

조 정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 추가요금

- 5km초과~10km이하: 280원/km

- 10km초과 : 70원/km

□ 운행지역 : 서울시계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접 13개 자역 및 수도권 운행)능)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괴천, 안양, 광명시 및 안천국제공항

✓ 상기지역 이외의 수도권지역(도서지역은 제외)에 장애인 재활목적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차 이동할 경우 사전에 이동지워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가능

※ **원칙** : **경유 및 왕복운행 불가** ('08.11 시내왕복 및 경유운행 폐지)

2 운영현황

□ 운영실적

7	-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차량보유		474⊏}	487대	487대	487대
<u>총</u> 등	답승인원	1,193,071명	1,251,271명	1,267,175명	1,171,424명
운행수입금		2,366백만원	2,476백만원	2,512백만원	2,317백만원
olπ i ⊐	접수인원	3,751명	4,005명	4,185명	4,077명
일평균	탑승인원	3,276명	3,429명	3,484명	3,209명
탑	승 률	87.3%	85.4%	83.2%	78.7%
대당 일평	한 운행횟수	9.5ই]	9.9ই]	9.৪ই]	9.4ই]
평균 대기시간		34분	38분 44분		58분
30분 이	내 탑 승률	58.5%	50.9%	43.0%	28.4%

[※] 일평균 탑승건수 산정 시 버스 제외(일평균 11건)

^{※ &#}x27;15. 1월 접수방식 변경(사전접수 ♪ 바로콜), 예약접수 시 발생하는 사전배차 시간(평균 5분) 미발생

□ 이용특성 현황(2018년)

(단위 : 건)

○ 장애유형별

ᅰ		지체장애		기타장애					
계	소계	지체	뇌병변	소계	시각	신장	기타		
1,171,424	831,644	371,194	460,450	339,780	3,336	31,042	305,402		
100%	71.0%	31.7%	39.3%	29.0%	0.3%	2.6%	26.1%		

○ 휠체어 이용유무

	휠체어		휠체어 미이용건	
71	이 용 건	소계	특장차	개인택시
1,171,424	769,645	401,779	269,228	132,551
100.0%	65.7%	34.3%	23.0%	11.3%

○ 운행거리별

일회 평균 운행 거리	전체	5km이내	5km~10km	10km~20km	20km초과
140 1/200	1,171,424	493,903	318,939	233,346	125,236
14.9 Km	100%	42.2%	27.2%	19.9%	10.7%

○ 이용목적별

계	진료·치료	재활 및 복지관 등	통학·통근	귀가	종교	기타
1,171,424	253,751	156,861	46,544	422,558	29,549	262,161
100.0%	21.6%	13.4%	4.0%	36.1%	2.5%	22.4%

○ **1인 이용건수 현황(월평균)** ※ 1인 평균요금 2,000원 / 1인 평균 운행비용 33,160원

1인평균 이용건수	1회 이상 이용자수	8회미만 이용자수	8~16회미만 이용자수	16회이상 이용자수
0.0	9,958	6,291	1,523	2,146
9.8	100%	63.2%	15.3%	21.5%

○ 운행지역별 현황

¬ н	-JI	וווו ס בו		시 계 외	
구 분	계	서 <mark>울</mark> 시내	계	진료목적	기타
건수	1,171,424	1,103,040	68,384	10,885	57,499
(%)	100.0%	94.2%	5.8%(100%)	(15 <u>.</u> 9%)	(84.1%)
거리(Km)	17,484,342	15,632,285	1,852,057	285,160	1,566,897

○ 이동경로 현황(자치구간 [출발-도착] 순위)

순위	구 간	탑승건수	건수비 율 (%)	거리(Km)
1	노원구 - 노원구	50,381	4.3	150,626
2	강서구 - 강서구	23,410	2.0	81,868
3	은평구 - 은평구	23,379	2.0	62,229
4	강동구 - 강동구	22,894	2.0	66,935
5	송파구 - 송파구	21,289	1.8	80,970
6	양천구 - 양천구	18,612	1.6	65,466
7	서대문구 - 서대문구	17,145	1.5	60,368
8	강남구 - 강남구	15,292	1.3	68,807
9	강북구 - 강북구	14,686	1.3	43,155
10	관악구 - 관악구	14,467	1.2	44,606

□ 시간대별 대기시간 현황

(단위 : 분)

연도별	004414	004514	004014	004=14	(건커 · 군)
시간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	48	64	60	52	56
1	42	60	54	45	47
2	28	35	33	31	34
3	20	26	23	25	27
4	10	19	20	27	45
5	16	20	29	41	72
6	69	46	48	56	66
7	36	30	40	48	67
8	30	32	42	49	62
9	31	31	39	47	60
10	20	19	24	28	37
11	15	18	23	27	40
12	17	23	29	33	49
13	21	25	32	38	54
14	23	27	38	45	65
15	28	32	45	55	74
16	41	41	50	61	77
17	51	45	53	60	72
18	45	42	46	51	56
19	42	42	40	45	46
20	38	40	37	42	39
21	49	59	56	59	51
22	57	64	66	61	53
23	55	63	57	52	51

□ 다인승 차량운영 현황 * 2명이상 동반탑승

○ 이용실적

구 분	총계	동 행	경 유	다인승버스
 2018년 (일평균)	27,487 (75.3)	18,588 (50.9)	4,953 (13.6)	3,946 (10.8)
2017년	26,090	17,078	4,684	4,328
(일평균)	(71.5)	(46.8)	(12,8)	(11.9)
2016년	20,850	12,788	4,251	3,811
(일평균)	(57.0)	(35.0)	(11.6)	(10.4)

○ 이용방법

- 함께 이용할 고객과의 요금등을 탑승전 협의 ♪ 콜센터 탑승내용설명 예약접수

- 탑승인원 _ 휠 이용자 1명 포함시 : 활동보조 및 보호자 포함 4명

└ 휠 이용자 없을 경우 : 활동보조 및 보호자 포함 최대 3명

○ 운영시간 : 24시간(연중)

○ 이용요금

● 동행콜 : 동승인 중 1명만 지불(버스 별도)



- 동행콜(특장차, 2인승 카니발) :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

❷ 경유콜 : 출발지~경유지 1회. 경유지~목적지 1회 각자 지불



- 경유콜(특장차, 2인승 카니발) : 동일 경로상 출발지 또는 목적지 중 하나가 동일

❖ 다인슝버스 (운영: '15. 1월~)

○ **탑승인원** : **12명** (휠4, 비휠8)

○ 이용방법 : 동일시간대 고객 집중 시설 출발 → 고객 목적지 경유

※ 이용집중시설(출발거점) 대상 : 국립재활원 등 8개소

○ **신청방법** : 기관별 사전 협의 후 우선 예약(3인이상 단체)

○ **이용요금** : **900원** *10.17일부 인상 (마을버스 성인요금 적용)

3 차량현황

○ **보유대수 : 487대** * 특별교통운영수단 436대, 다인승 버스 1대, 개인택시 50대

· — · · · · · ·		_0 0 1 191, 711 711	00011		
연식	대수	단가	탑승장치	특징	비고
계	487	-	리 <u>프트</u> 196 슬로프 241	-	전동의자 : 287대
2009	67	37백만원	슬로프(100)	프튀어ㅎ	
2010	39	39백민원	리 <u>ㅍㅌ(</u> 39)	(실내고 확보)	0-0
2012	60	40백만원	슬로프(30) 리 <u>프트(</u> 30)	하이루프 (실내고 확보)	
2013	50	-	-	장아인전용가인택시 (비뚤체어 전용)	
	11	40백만원	리 <u>프트(</u> 11)	프튀어ㅎ	
2013	50	43백만원	리 <u>ㅍㅌ(</u> 50)	자동 리프트 및 반자동	
	10	43백만원	리 <u>ㅍㅌ(</u> 10)	2 <u>] 교 E</u>	
	21	34백만원	리 <u>파트(</u> 15)	하이루프 자동 리프트	
		34백만원	<u>슬로프(</u> 6)	저상슬로프(카니발)	
2014	29	36백만원	슬로프(9)	저상슬로프 (카니발2인승)	
	29	34백민원	리 <u>프트(20)</u>	하이루프 자동리 <u>프트</u>	
	1	81백만원	리 <u>프트(</u> 1)	자동 리프트	La grand and
		40백만원	리 <u>ㅍㅌ(20)</u>	프튀어ㅎ	
2015	51	. — —	~j=.=(20)	자동 리프트	
		38백만원	<u>슬로프(</u> 31)	저상슬로프(카니발)	
2016	48	39백민원	<u>슬로프(</u> 48)	저상슬로프(카니발)	
2017	50	39백민원	슬로프(50)	저상슬로프(카니발)	-

【 제 원 】

※ 길이, 너비, 높이는 차량의 휠체어 탑승부 실내규격

	구 분 델연식)	유형	길이 (mm)	너비 (mm)	높이 (mm)	총중량 (kg)	배기량 (cc)	정격 출 력 (ps/rpm)	정원 (명)
	2009	슬로프	1,300	750	1,470	2,785	2,497	174/3,800	7
	2010	리 <u>ㅍㅌ</u>	1,400	700	1,470	2,885	2,497	174/3,800	7
2012	오텍	슬로프	1,300	750	1,470	2,785	2,497	174/3,800	7
2012	챙임	슬로프	1,500	750	1,500	2,795	2,497	174/3,800	7
2012	오텍	리ㅍㅌ	1,400	780	1,470	2,875	2,497	174/3,800	7
2013	창림	디프트	1,200	750	1,500	2,885	2,497	174/3,800	7
	오텍	리 <u>ㅍㅌ</u>	1,400	780	1,480	2,100	2,199	130/3,800	7
2014	창림	슬로프	1,450	770	1,470	2,875	2,497	174/3,800	6
	마버스	리 <u>ㅍㅌ</u>	2,250	760	1,440	5,305	3,933	170/2,500	15
	오텍	리 <u>ㅍㅌ</u>	1,400	780	1,470	2,875	2,497	175/3,600	7
2015	오텍	人口ㅠ	1,350	800	1,450	2,490	2,199	202/3,800	6
	챙림	<u>슬로프</u>	1,450	770	1,480	2,580	2,199	202/3,800	6
	오텍		1,470	770	1,470	2,595	2,199	202/3,800	6
2016	창림	<u>슬로프</u>	1,460	760	1,460	2,490	2,199	202/3,800	6
	이지무브		1,440	840	1,430	2,590	2,199	202/3,800	6
	오텍		1,470	780	1,470	2,600	2,199	202/3,800	6
2017	창림	슬로프	1,440	770	1,485	2,560	2,199	202/3,800	6
	이지무브		1,500	840	1,450	2,590	2,199	202/3,800	6

○ **차량부속장치 현황(총13종**) ※ 대당 301만원

구분	콜 장비 (1,300천원)	요금표시등 (200천원)	탑승중 표시등 (200천원)	블랙박스 (200천원)
용도	· 내비게이션, 무전기, 택시미터기, 카드결제기(무상대역)	· 고객이동 중, 도착 후 이용요금 확인	· 고객 탑승상태를 외부 에서 식별	 차량 운행상태 확인 차량 내 안전사고 자료확보
비고			Tare	
구분	운전자 안전 보호벽 (330천원)	후방카메라 (10천원)	자동발판 (570천원)	데 칼 (200천원)
구분 용도			·	· —

※ 기타(등-목받이, 대소변기, 우산 등)

○ 차량 구매방법(절차)

조달청 등록대상차량 (4개 업체)	•	차량선정위원회 평가	•	차량 선정(평가 반영)
-----------------------	---	------------	----------	--------------

- 조달청 등록업체(4개) : ㈜오텍, 창림모아츠㈜, ㈜이지무브, ㈜뉴원이엔씨
- 차량선정위원회(8명)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1, 차량 전문가 3, 장애인 단체 4
- 차량선정위원 평가 : 탑승방식(슬로프/리프트) 및 업체 구매비율 결정

○ 향후 3년간 대폐대상 현황

구	분	계	2018 ('09,'10년식)	2019 ('12년식)	2020 ('13년식)
대	상(대)	237	106	60	71
 계 획	대수 (대)	237	106	60	71
´∥ ≒	예 산 (백만원)	9,717	4,346	2,460	2,911

^{*} 최단 7년경과, 총 주행거리 15만km이상 중 노후화 정도 고려

□ 운행형태

○ 시차제 운행 : 주간 9개조(48명/조), 야간 2개조(11명/조)

7 8		운행대수		07:00	08:00	10:00	12:00		휴무인원		ק ונ
구분	계	주간	야간	~17:00	~18:00	~20:00	~22:00	계	주 간	야간	비고
평 일	371	360 (7.5개조)	11	3개조 (144대)	2개조 (96대)	1.5개조 (72대)	1개조 (48대)	83	72 (1.5개조)	11	* 야킨네다쀝
투유일	203	192 (4개조)	11	1개조 (48대)	1개조 (48대)	1개조 (48대)	1개조 (48대)	251	240 (5개조)	11	격일근무 19:00~07:00 *장애인버스(1)
일요일 (공휴일)	203	192 (4개조)	11	1개조 (48대)	1개조 (48대)	1개조 (48대)	1개조 (48대)	251	240 (5개조)	11	별도

- 근무편성 ┌ 정 규 : 주간 9개조(조당 48명) / 야간 2개조(조당 11명)

└ 개인택시 : 2개조(50명) … 평일 7시(25명), 8시(25명)

- 휴무차량 : 기간제(파트)운전원 탑승 ****** 파트 23명(주 6일 5시간 근무)

○ 평일

구	ル	06~ 07	07~ 08	08~ 10	10~ 12	12~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2	22~ 24	24~ 06
정	규	11	144	241	313		361	217	120	131	59	11	11
피	E	-	3	3	3	1	1	20	20	19	19		
개	인	_	25	50	50	50	50	50	50	25	-	-	-
7:	1	11	172	294			412		190	175	78	11	11

○ 주말/공휴일

구	분	06~ 07	07~ 08	08~ 10	10~ 12	12~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2	22~ 24	24~ 06
정	규	11	48	96	144	192	192	144	96	107	59	11	11
파	E	-				23	23	23	23	23			
개	인	_	-	-	_	-	-	-	-	-	-	-	-
7:		11	48	96	144				119		59	11	11

[※] 파트 (토요일 기준)

○ 무료 22개소 291대(공단 16, 유관기관 5, 민간 1) / 유료 13개소 148대(월 11,466천원)

구 분		무 료(22개소)		유 료(13개소) * 연간 137,592천원			
- 1	공 단	유관기관 (구청, 공영 등)	민간업체	자시공단	민간업체		
35개소	16	5	1	9	4		
437대	218(50%)	59(14%)	12(2.7%)	95(21.7%)	53(12%)		

○ 대기실 현황 : 총 20개소

7	4	ਰ	단	타 기관		
차고지	대기실	차고지	대기실	치고지	대기실	
35	20	16	17	19	3	

[※] 인터넷 설치(15개소) : 창동, 종묘, 월드컵, 수서, 개화산, 천호, 면목, 천왕, 어린이대공원, 신천, 용답, 목동, 마포, 사당, 화랑대

【 차고지 현황 】 🔛 무료(공단), 🔛 무료(유관기관) *면목홈플러스(무료) / 🔛 유료

연번	차고지명	소재지	주차 대수	대기실	연번	차고지명	소재지	자 따	대실
1	개 화 산	강서구 방화동845	23	유	19	신 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5	10	
2	구 파 발	은평구 진관동 66-30	5	유	20	신 당	중구 신당2동 432-1584	7	
3	남부여성센터	금천구 시흥동4동 139-2	9	유(타)	21	신 림	관악구 신림5동 1456-3	11	
4	대림운동장	영등포구 대림3동 780	11		22	신 천	송파구 신천동 14	10	유
5	도 봉 산	도봉구 도봉동 341-1	10	유	23	아 리 랑	성북구 돈암동 538-59	13	
6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용두동 39-90	10		24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u>능동</u> 18	11	유
7	동 작 공 원	동작구 동작동 326	9		25	영등포구청역	영등포구 당산3가 370-4	9	유
8	마포유수지	마포구 마포동 36-1	11	유	26	용 답	성동구 용답동 223	11	유(타)
9	면목홈플러스	중랑구 면목5동 168-2	12	유(타)	27	용 산	용산구 한강로3가 19-2	10	
10	목 동	양천구 목동 914-6	12	유	28	월드컵경기장	마포구 성산동 515-6	19	유
11	북서울 꿈의숲	강북구 번동 106-3	19						"
12	사 당	서초구 방배동 507-1	9	유	29	으 뜸	양천구 신월동 263	8	
13	상 암	마포구 상암동 1621	11		30	종 묘	종로구 훈정동 2	16	유
14	독 립 공 원	서대문구 통일로251(현저동101)	11		31	창 동	도봉구 창동 1-9	34	유
15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동 316	13		32	천 왕	구로구 오류동 174-10	10	유
16	수 락 산	노원구 상계동 1268	13	유	33	천 호	강동구 성내2동 57-7	19	유
17	수 서	강남구 수서동 735	21	유	34	한우리정보문화	서초구 서초동 380	8	
18	시 립 은 평	은평구 백년사로90 (응암동 232-23)	11		35	화 랑 대	중랑구 묵동 29	11	ĥ

□ 차량정비 현황

7 H	OH=IIIH	게OEələL		7	정비현황	
구 분	업체명	계약기간	구 분	2016	2017	2018
<u> </u>	마스타자동차관리(주) ※ 토탈 아웃소싱	'18. 1. 1 ~ 12. 31	생건수	14,090건	21,784건	22,322건
(93개소)	계약금액 10억4천1백만	(127階)	금 액	886백년원	947백만원	1041백만원
म् बिब्र	영운 언에스(주)	'18, 1, 1 ~ 12, 31	쟁 ¹ 건수	2,463건 (1,385/1,078)	2,450건 (1,186/1,264)	2,4327 1 (1,021/1,411)
(5개소)	계약금액 1억7천1백만	(127階)	금 액	120백민원	124백민원	154백만원
특징정비	(주)오텍 ※ 창림 실정비 정산	'18. 1. 1 ~ 12. 31	쟁 ¹ 건수	1,055건 (675/380)	1,146건 (687/459)	769건 (526/243)
700-1 (37階체)	※ 아무브 무상기간	(127階)	금 액	57백1원	52백만원	50백년
	※ AS 보증기간 : 오텍/	/창림/º 자무브 3º	년 또는 8만	ζm		

[※] 타이어 정비건수 '14, '15년은 신품 교환건수이며 '16년은 신품 및 보관품 정비건 포함임(신품/보관품)

□ 주유소 운영 현황

○ 업체명: SK네트웍스 62개소 (2018. 1. 1 ~ 2018. 12. 31, 12개월간)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강남구	6	강동구	5	강북구	2	강서구	3	관악구	2
광진구	2	구로구	1	금천구	1	노원구	2	도봉구	1
동대문구	1	동작구	2	마포구	3	서대문구	0	서초구	5
성동구	1	성북구	4	송마구	4	양천구	4	영등포구	4
용산구	4	은평구	1	종로구	1	중구	1	중랑구	2

[※] 수도권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약 136개소) 이용 가능

○ 계약금액 : 후불제 (총무처 업무용차량 유류 연간단가계약)

○ 주유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주유량(ℓ)	2,512,696	2,521,527	2,350,213
금액(백만원)	2,897	3,178	3,225

[※] 오텍, 창림 정비건수 '14, '15년은 유상건수이며 '16년은 유,무상 포함임(유상/무상)

[※] 오텍특장 정비비는 세미 에어서스펜션 리콜 감액 월 1백만원 차감 후 정산함(2015.09월 ~ 2020.06월)

□ 교통사고 처리현황

○ **처리기준** * 근거 :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 이사장 방침('13.11)

- 최근 2년 1~2회 사고 : 주의·경고

- 최근 2년내 3회 이상. 중과실 사고 : 징계 (최근 1년내 2회 이상 : 승무정지)

※ 근무성적평가 반영: 10점 배점(사고건수와 보상금액 합산하여 감점)

○ 처리절차

나그바색	신고	보험사	통보	・ 주의・경 コ(역사처)
(운전원)	\rightarrow	관리팀 (경위서제출)	\rightarrow	・ 징계 (감사실)

○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6	2017	2018
계	198	222	201
가 해 (과실율 50% 이상)	101	101	96
피 해 (과실율 50% 미만)	97	121	105
기 타 (분쟁, 무과실 가해)	-	-	-
탑승건수 (일평균)	1,251,271 (3,429)	1,267,175 (3,484)	1,171,424 (3,209)
탑승건수 대비	0.014%	0.015%	0.015%
행자부 평가기준	114	107	103

** 행자부 평가기준 : 과실율 50% 이상 보험처리 완료한 대인, 대물 건수

※ '14~'15년도 행자부평가기준 대인 5만원, 대물 50만원 미만, 기간제 사고 등 미포함

□ 차량보험

○ 2018년 차량보험 가입현황

- 업 체 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기 간 : '18.1.31.~'19.1.31.(437 대) - 금 액 : 510,045천원 (대당 1,167천원)

	담토	브내 용	가입금액	기타 특약사항
	다인배상 I (책임보험)		자동차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Ⅱ (임의보험)	무 한	
	디	물배상	100,000만원	· 만 21세이상 특약
	지기	신체사고	30,000만원	• 유상운송 특약
	વિદ	^{사량손해}	자기부담금 20~50만원	· 관용자동차 특약
	무보험자동차 상해		5억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
	긴급출	승용 : 견인40km이상 카운티: 제외		· 담보/특약 공시조건이상
	7 JE	기타특약 원격운반서비스		
벌	형사합의	사망	3,000만원	
법교환지 언트 약	지원금	부상	1~3급:2천만원/4~7급:5백만원	· 법률지원특약 공시조건이상
원트	벌	금 (1사고당)	2,000만원	日担 11 でつつ 0 11 11 10 10 11 10 11 11 11 11 11 11 1
약	특 <u> </u>		500만원	

○ 최근 3개년 보험가입 현황

구 분	대 상	보험료	보험회사
2018	437⊏ዝ	510,045천원 (1,167천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수의계약)
2017	437대	666,396천원 (1,524천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입찰계약)
2016	437⊏ዝ	414,543천원 (948천원)	㈜KB손해보험 (수의계약)

☑ 교통법규위반 현황 * 과태료 운전원 부담

(건수/인, 금액/천원)

7 8	계		신호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주정차위반		기타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급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469	23,662	115	9,540	135	5,230	18	680	198	8,032	3	180
2017	649	33,892	180	14,520	189	7,520	50	2,000	222	8,932	14	920
2016	546	30,814	202	16,240	70	2,984	47	1,880	208	8,300	19	1,410

[※] 주·정차 위반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로 과태료 취소 요청 사유임

[※] 기타(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통행구분 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 공용차량 및 업무택시 운영지침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인택시 운영현황

□ 운영개요

5

○ 운영대수 : 서울시 개인택시 50대(1년 단위 계약)

* '13. 7월부터 시행

구 분	대 수	관 할 지 역	비고
1권역	11대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10,15 =
2권역	11대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울시등록 개인택시
3권역	13대	성동,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인택시 사업자
 4권역	15대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 J H, J

○ 운영방식 : 개인택시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방식

• 운행시간 : 주5일(12시간/일), 주중 3개조(6시, 7시, 8시), 토·일·공휴일은 제외

※ 6~20시의 범위 안에서 운행편성을 사업자가 월단위로 선택

도급수수료 : 고정급 → 실적제 운영('15년), '17년 월평균 290만원, 1콜당 12천원

구 분	콜(건)	주행거리(km)	주행시간(분)	픽업시간(분)	비고
요욜(%)	20	45	20	15	수수료산정
단가(원)	2,384	568	92	107	= 운행실적 * 단가

※ 운행수입금 : 일평균 27천원×20.67일=약 55만원 예상(이용요금 조정시 수수료 조정 가능)

• 운행방법 : 이동지원센터 배차시스템 연계. 장애인전용 콜택시 표지 부착

※ 그 외 유류비, 보험, 차량정비비 등은 모두 사업자 부담

○ 이용대상 : 1 · 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

* 3급 지체 및 뇌병변 임산부 병원진료 시

□ 운영실적 (열평균)

구 분	2016	2017	2018
탑승건수(건)	378	383	363
회전율(건)	11.9	11.9	11.6
운행거리(km)	190	189	186

○ 운영비 절감 : 특장대비 연간 2,156백만원 절감(42.1%)

- 택 시(월 2,967천원) : 보조금 2,900천원, 통신비 50천원, 기타 17천원

- 특 장(월 5,123천원) : 인건비 3,167천원, 경비 1,491천원, 차량구입비 465천원

6 민원처리 현황

□ 민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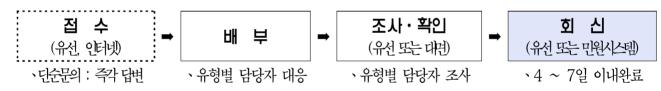
○ 총 괄 ··· 접수경로 : 市 응답소(71%), 공단 VOC(29%)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민원 건수		187	215	303	
0	불친절 등	30(16.0%)	11(5.1%)	20(6.6%)	
유	대기시간	23(12.3%)	40(18.6%)	46(15.2%)	
형 별	정책건의	36(19.3%)	43(20.0%)	88(29.0%)	
2	기 타	98(52.4%)	121(56.3%)	149(49.2%)	
탑승건수 대비 발생률(%)		0.015	0.017	0.026	
₹ 	퉁 탑승건수	1,251,271	1,267,175	1,171,429	

※ 연간 총 탑승건수 대비 민원 발생률 비슷한 수준 유지

○ 민원처리절차



자원봉사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운영개시일 : 2010년 3월

- '15년 시민봉사단 "아름누비" 발족, 314명(대학생, 은퇴자 등)

○ 운영방법 : 2인 1조(운전원 + 탑승보조), 행자부 1365 자원봉사센터 신청

○ 운영지역 : 창동, 월드컵

□ 운영실적

7 H	총	계	직	원	시 민		
구 분	참 여 탑 승		참 여	참 여 탑 승		참 여 탑 승	
2018	1,397명	4,419건	1,062명	3,384건	335명	1,035건	
2017	2,041명	5,824건	1,503명	4,354건	538명	1,470건	

8 콜센터 운영현황

□ 운영개요

○ 근무인원 : 41명 [관리직 3명, 상담원 38명]

○ 근무형태 : 주간 4개조 시차제 근무 / 야간 교대 근무

- 일평균 시간대별 근무인원 (평일 26명, 공휴일 15명)

구분	7~8	8-9	9~10	10~12	12~16	16~17	17~18	18~19	19~21	21~22	22~ 익일 07
26명			24					13	7	4	2

○ 주요업무 : 접수, 차량배차(전담자 운영), 지연안내, 민원처리, 상담 등

【 이용체계 】

① 콜접수

이용시민이 전화/문자,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신청

② 배 차

대기시간, 접수순서 등에 따라 가장 근접 차량연결

③ 서비스

운전자, 이용시민과 통화 후 이동하여 목적지까지 운행

□ 접수방식 : 바로콜(80%), 사전접수(20%)

구 분	이용방법	배차기준					
바로콜	바로	접 수 순 서(30%)+대기시간(30%)+거리(30%)+치료목적(10%)					
정기접수	2시간전 접수	합부판시(30%)(포테기시간(30%)(포기니(30%))포시 표 국 각(10%)					
예약(전일)	전일(7시, 8시, 10시)	각 시간대 출근 차량					

-【 우선배차기준 】

- ① 전일접수자(07시, 08시, 10시) → 우선배차
- ② 장시간 대기고객(60분 초과) 우선 배차 \rightarrow 먼 거리에서도 당겨서 배차
- ③ 운전자 퇴근시간대 → 근거리에 있는 고객 목적지가 방향인 경우 우선배차

■ 콜센터 운영실적 (일평균)

		접수(건)			배차(건)		지 연	수신률
구 분	계	상담원	기타 (인터넷,앱 등)	계	상담원	자 동 배차	안 내	(%)
2018	4,077 (100%)	1,997 (49%)	2,080 (51%)	3,209 (100%)	2,102 (65%)	1,107 (35%)	318	96.1
2017	4,185 (100%)	2,262 (54%)	1,923 (46%)	3,484 (100%)	1,824 (52%)	1,660 (48%)	474	96.3
2016	4,005 (100%)	2,453 (61%)	1,552 (39%)	3,429 (100%)	1,886 (55%)	1,543 (45%)	459	97.6

□ 콜장비 현황

○ 센터부문

구분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교환기	보안장비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등)	기타
수량	14	4	10	4	4	3	4

○ 차량부문

			도입시기				-II - II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조사	비고	
이 <u>동통</u> 신기기(대)		-		495	13	KT파워텔	28천원요금제 (3년 약정)		
내비게이션(대)	520	400	90	-	30	-	팅크웨어		

Ⅳ 기타 통계 자료

□ 전국 장애인 등록 현황(2017년 12월 기준)

○ 전체 : 2,545,637(1·2급 : 534,681명)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545,637	199,186	340,202	439,138	379,007	544,542	643,562
(100%)	(7.8%)	(13.4%)	(17.3%)	(14.9%)	(21.4%)	(25.3%)

○ 주요 시·도 등록현황 비교

시ㆍ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서 울	391,753	33,047	52,908	65,460	57,984	82,538	99,816
부 산	171,384	13,250	23,477	30,692	25,310	35,374	43,281
인 천	138,304	10,769	17,581	23,799	21,041	29,562	35,552
경기도	533,259	43,247	70,569	90,114	76,399	112,962	139,968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록 현황(2017년 12월 기준)

○ 전체 : 391,753명(1·2급 : 85,968명)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391,753	33,047	52,908	65,460	57,984	82,538	99,816
(100%)	(8.5%)	(13.5%)	(16.7%)	(14.8%)	(21.0%)	(25.6%)

○ 자치구별 현황

▶ 이용시민이 가장 많은 자치구 : 강서구

순번	구	인원	비율	순번	구	인원	비율
1	강서구	28,717	7%	2	노원구	27,436	7%
3	은평구	21,301	5%	4	관악구	20,103	5%
5	중랑구	20,034	5%	6	송파구	19,790	5%
7	성북구	17,529	4%	8	강 동 구	17,413	4%
9	강북구	17,377	4%	10	구로구	17,289	4%
11	양천구	17,232	4%	12	동대문구	15,893	4%
13	강남구	15,617	4%	14	도봉구	15,196	4%
15	동작구	14,590	4%	16	영등포구	14,351	4%
17	마포구	13,250	3%	18	서대문구	12,644	3%
19	광진구	12,514	3%	20	성 동 구	11,770	3%
21	금천구	11,059	3%	22	서초구	10,774	3%
23	용산구	8,116	2%	24	종로구	6,064	2%
25	중구	5,694	1%	계	서울시	391,753	100%

○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 85,955명(2017.9 기준) / 공단등록 : 30,445명(이용대상의 35%) ▶ 1 · 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44,419

장애유형	합계	1급	2급	비고	
합 계	44,419(100%)	24,341(54.8%)	20,078(45,2%)	1,2급 전체대비 52%	
뇌병변	18,186(41%)	9,724	8,462		
지 체	14,612(33%)	5,161	9,451		
지 적	6,775(15%	6,775	-	보호자 동반	
자폐성	4,525(10%	2,360	2,165	보호자 동반	
호흡기	321(1%)	321	-		

▶기타1·2급(휠체어 탑승시 이용가능)장애인 : 41,536명

장애유형	합기	섹)	1급	2급	비고
<u>합</u> 계	41,536	(100%)	8,706	32,830	1,2급 전체대비 48%
지 적	8,324	(20%)	-	8,324	1급 휠체어 여부 무관
신 장	12,265	(30%)	899	11,366	
청 각	7,830	(19%)	952	6,878	
시 각	7,473	(18%)	6,423	1,050	
정 신	4,261	(10%)	307	3,954	보호자 동반
호흡기	592	(1%)	-	592	1급 휠체어 유무 무관
심 장	157	(0%)	16	141	
언 어	328	(1%)	19	309	
간	115	(0%)	49	66	
뇌전증	87	(0%)	25	62	
안 면	85	(0%)	16	69	
장루.요루	19	(0%)	-	19	

※ 법정대수 산출대상 : 1, 2급 장애인 전체 **85,955명**

▶ **법정대수 :** { 산출대상 인원÷200명 }

{ 85,955명 ÷ 200명 } = **430**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